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법인명

- 주식회사 스칼라웍스(대표자 : 신용선)
-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대표자 : 차윤희)

나. 전화번호 : 주식회사 스칼라웍스 담당자 고석호(☎031-460-500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 칭 : 카메라 기반 다차로 전(全)방향의 실시간 속도 측정 및 교통량, 객체인식 기술 및 적용 제품

나. 분 야 : 교통시설 / 도로 / 보행자 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 안전 관리, 교통시설 / 도로 / 교차로

3. 기술범위 및 주요 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 카메라 기반 다차로 전(全)방향의 실시간 속도 측정 및 교통량, 객체인식 기술 및 적용 제품

나. 주요 기술내용

-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다차로 전(全)방향의 차량을 식별하고, 별도의 검지기(센서) 없이 카메라에 표시된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측정하는 기술. 이 기술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 속 차량을 포출하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서 차량의 속도를 알려 감속을 유도하는 제품으로 보행자에게는 보행주의를 알리고, 우회전 차량에게는 움직이는 객체를 알려 교통안전을 유도하는 제품이다.

4.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24. 1. 26.(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14066)

5. 기타사항

지정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6350, 팩스 : 031-38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